

강원도립대학교 체육진흥 관리위원회 규정

(제정) 2006-11-27 규정 제172호
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302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강원도립대학교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<개정 2016.4.25>
2.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활용
3. 체육부내 지도자 임면에 관한 사항
4. 기타 체육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장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학생생활관장, 체육부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 체육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10.15><개정 2016.4.25>
2.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3.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부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2. 위원이 유고될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체육부 설치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체육부를 둔다.

- ② 체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(2006. 11. 27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15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